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601
----------	-----

2025. 10. 14.
경제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9. 30. 강남구청장(지역경제과)

나. 상정의결

- 제33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14.)
“ 원안가결 ”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 : 기획경제국장 심혁보)

중소벤처기업부의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표준조례안에 따라,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 중 밀집기준을 완화하여 관내 소상공인및 소비자들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소상공인들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여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골목형상점가 지정 밀집기준 요건 변경(안 제7조제1호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(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25. 8. 22. ~ 2025. 9. 1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(3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5. 검토보고(전문위원 : 이주현)

가. 개정 취지 및 배경

○ 중소벤처기업부,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정 협의 알림

- 2023년 7월 중소벤처기업부는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(이하 “전통시장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골목형상점가를 보다 용이하게 지정할 수 있도록 <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자체 조례 협의(안)>을 제시하였고, 2024년 1월부터는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을 완화한 지정조례(안)으로 협의 요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한다는 사실을 알렸음.

○ 중소기업 ombudsman의 규제 개선 권고

-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소속 중소기업 ombudsman은 일부 지자체 조례에 명시된 ‘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 제출서류 항목’이 상위법령인 전통시장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, 해당 규제의 개선을 권고하였음.
- 2025년 2월 강남구는 중소기업 ombudsman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고 「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」를 개정하여 실제 업무에 반영함.

- **중소벤처기업부,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 표준조례안 배포**
 - 2025년 3월 중소기업부는 전통시장법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을 독려하는 한편 인구감소지역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을 보다 더 완화한 <골목형상점가 표준조례안>을 배포함.
- **서울특별시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현황**
 - 2025년 7월부터 강남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상권을 모집하려는 목 적으로 골목상권 조직화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나, 2025년 9월 말 일 기준 강남구 골목형상점가는 부재한 상황임.

나. 검토 내용

- **골목형상점가 인정기준 필요요건 중 업종 및 점포 수 완화**
 - 현행 제7조는 전통시장법 시행령 제2조의2(요건)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<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>을 시행령에서 제시한 것 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 명시한 것임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[시행 2025. 3. 21.] [대통령령 제35380호]	
	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 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"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 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- **안 제7조제1호**는 위 조문의 단서에 근거하여 이 중 ‘점포 밀집도’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, 이에 따라 현행조례를 개정할 경우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요건이 완화됨.

<서울특별시 강남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개요>

구분		골목형상점가
지정 요건	운영 주체	•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
	구역 면적	• 면적 2,000㎡ 이상인 구역
	업종 제한	• 온누리상품권 가맹가능 업종 (권장)
	점포 밀집도	• 점포 30개 이상 → 점포 15개 이상
신청서류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 •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•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 • 전체 상인 명부

- 이번 개정은 ①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시한 <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표준조례안>을 참고하여 중기부 전통시장과에 협의요청한 결과에 따라 조치하는 것이고, ②서울시 전체 자치구 중 골목형상점가가 부재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므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고 시의적절하다고 보임.

다. 종합 의견

○ 입법 취지에 따른 사업 추진

- 올해 2월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고를 수용하여 규제 개선을 이행한 후 3월에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완화에 관한 안내를 공문 수신하였는데,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중기부에 조례 개정을 위한 협의요청을 추진한 것은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됨.
- 골목형상점가 지정 가능 대상지가 존재하고 소관부서에서 전문업체를 동원한 골목상권 조직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쏟고 있음.

○ 기대 효과

- 이번과 같이 신속하게 사업 추진을 한다면 지역 소상공인들과 상인 조직의 호응을 바탕으로 강남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.

○ 향후 과제

- 일부 업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제한되기 때문에¹⁾, 되도록 온누리상품권 가맹가능 점포로 골목형상점가 구성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.
- 적극적인 골목형상점가 발굴, 소상공인들의 자생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지속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임.

1)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16제1항 관련
[별표 1] 온누리상품권 등록 제한업종

※ 관계 법령 등

지방자치법 [시행 2024. 9. 10.] [대통령령 제34886호]

- 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
(이하 생략)
-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소상공인기본법 [시행 2021. 3. 9.] [법률 제 17623호]

- 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[시행 2025. 7. 22.] [법률 제20706호]
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2의2. “골목형상점가”란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 중 특별자치도·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(구는 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“시·군·구”라 한다)의 조례로 정하는 곳을 말한다.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[시행 2025. 7. 22.] [대통령령 제 35630호]

- 제2조의2(골목형상점가의 요건) 법 제2조제2호의2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밀집하여 있는 구역”이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. 다만,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-173호(2024. 1. 22.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자율 지정 알림)

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-1617호(2023. 7. 31. 골목형상점가 밀집기준 지방자치단체 조례 협의 (안) 알림)

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

[시행 2025. 3. 21.] [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2027호]

- 제7조(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)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.
1.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일 것. 다만, 면적 산정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도로, 나대지,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.
 2. 법 제2조제3호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

6. 질의 및 답변 요지 : “생략”

7. 토론 요지: “없음”

8. 심사 결과 : “원안가결”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“없음”

10. 기타 사항 : “없음”

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
개정조례안